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2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맹성규
전종덕·조계원·오세희
장종태·조인철·문금주
노종면·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이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보도록 하며,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및 제58조제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3(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 시료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검사에 한정한다)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조치,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제2항”을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방역관) ①·② (생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u>작업장</u>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3조의3(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 시료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검사에 한정한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조치,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3제1항-----

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5. (생략)	----- 4.·5. (현행과 같음)
-----------------------------	-------------------------